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및 그 부속학교인 송원대학의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학년도의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수익사업의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송원대학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와 그 부속학교인 송원대학의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수익사업회계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상의 회계처리방법과 상이합니다.

(계 속)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와 그 부속학교인 송원대학의 등록금회계 및 기금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학년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0학년도부터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0학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감가상각금액을 당해 연도에 소급하여 전액 반영하였으며, 개정 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기본금에 대해 2009학년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2010학년도부터 그 이후에 발생할 감가상각비는 전기이월운영차액의 과목으로 하여 유형고정자산과 관련된 기본금과 대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명철



2011년 4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1년 4월 2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대학교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